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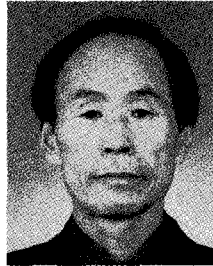
축산업등록제, 신중하게 재고 해야

지난 6월 25일 축산등록제 공청회 자리에서 등록제 시행방안 책자를 받아 보면서 순간 현기증이 났다. 언젠가 식당을 경영하면서 위생검열을 받아 본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얼음장 같이 냉엄한 자세 앞에 식당운영자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쓰디 쓴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었고 그 후 영업을 그만둔 일이 문득 뇌리를 스쳐지나갔다.

축산등록제 시행과 관련해서 찬성 쪽도 반대하는 쪽도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자기의 현 위치에서 판단하고 결론내린다. 실례로 충분한 면적확보 등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쪽에서는 찬성을, 그렇지 못한 쪽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고, 축산을 오랫동안 계속했던 축산인들의 반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의 축산업등록제를 골자로 한 축산법은 2002년 12월 개정하고 금년 12월부터 시행을 목적으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고 현재 수출중단으로 과잉된 돼지 및 원유 등 축산물 생산량 감축을 행정력으로 강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축산업등록의 일정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규정된 내용을 위반할 시 벌칙과 과중한 과태료 부과 방침과 부업농에 해당하는 농가를 불문하고 관리대상 및 입증서류를 비치하여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등록제는 결국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이 광 옹
본회 이사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아 경쟁력을 갖추자는 명분으로 가축질병 예방법, 악취방지법 등과 함께 제정되는 것으로 축산업에 대한 규제의 성격이 강한 법률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오·폐수처리시설에 관한 법률(이하 오분법)을 보장하여 청결유지 준수, 위생장비 구비, 오·폐수처리시설 의무화, 축사규격에 의한 사육제한 및 조정명령권 등 광범위하며 영업정지처분권과 등록취소권 등 강력한 행정명령권이 그 특징이다.

완벽한 축사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농지(조사료포)를 확보하여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하더라도 현재의 농축산물 수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고 규제법률만 있는 한 축산인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사료된다. 따라서, 축산업등록제는 위생적 축산물의 생산 및 수급조절과 가축 이동 및 사육관리라는 행정적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중복적 규제와 벌칙으로 축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등록제의 문제로는

첫째, 이중적 규제는 생산비 증가와 농가 소득감소는 물론 정신적 불안요인으로 작용 폐업 농가의 속출, 축산업 전반에 불황으로 인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 축종의 특성에 따라 축사의 형태와 환경이 다르므로 다른 법(건축법)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계류식이 필수인 축종과 개방식 형태의 축종이 있고 가

설 건축물로 가능한 축종이 있어 사육수의 변화 및 사육환경의 변화과정에서 부분 무허가 시설이 발생될 수 있으나 비가림 시설 등 현행법 상 축분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해 또 다른 무허가 발생이 불가피하게 된다. 법의 이행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다른법의 범의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셋째, 가설 건축물도 축사면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기술이 필요하며 청결유지 준수 조항은 그 기준이 상대적이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축산업등록제는 동일성격의 타법과

함께 규제 강화를 위한 법으로 인식되면서 축종에 따라 비판적, 독소적 성격의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농촌의 사회적 문제인 기존 농가부채와 더불어 또 다른 부채를 만들게 된다. 무허가 축사(가설 건축물 포함)에 대한 특단의 양성화 조치와 관련 부처간 충분한 행정 협의로 행정 간소화 및 지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기구 및 시설 설치 비용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처럼 정부가 전액 보조하고 지방자치 차원의 대규모 축분 비료화 시설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환경분담금으로 축산환경개선에 지원이 계속되지 않는 한 축산업 등록제는 축산인에게는 악법이라는 오명과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축산업등록제, 낙농가 대부분 범법자 만들어

우리 낙농업의 현실이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에, 더더욱이 우리 낙농업자의 목을 조여오는 정부의 축산업등록제라 하는 이 법안을 접하고보니 정말로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 낙농업이 오늘날 이 어려운 지경에 처한 현실을 되돌아 보게된다. 과연 지금 이 불황이 우리 낙농가의 잘못인가. 모든 부분들이 정부의 정책부재에서 온 것이 아닌가. 낙농진흥회 집유일원화, WTO, DDA등등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낙농가가 잘못해서 생긴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농림부, 낙농진흥회에서는 모든 잘못이 낙농가의 무분별한 증산으로 몰아부치는, 이러한 작태등을 볼때 과연 우리 정부에서 농업 특히 축산업을 지



이용우
농산낙우회장

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것인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때에 졸속하기만한 축산업등록제의 도입배경 내용을 조목별로 열거해보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정축산물의 생산을 촉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우유가 저품질이고 불안정한 축산물인가?

아니다. 이부분은 당연히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유대체제를 보면 유지방, 세균, 체세포 등이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그러면 내가 영위하는 낙농업이 살아남고, 나의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하게하기 위해선 당연히 고품질의 원유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항생제 등 발육억제물질이 우유에